

NEWSLETTER

March 2022

경제제재 그룹

Economic Sanctions Group

CONTACT



변호사 김동은

T: 02.772.4397
E: dongeun.kim@leeko.com



변호사 이경훈

T: 02.772.4419
E: kyunghoon.lee@leeko.com



외국변호사 권순엽

T: 02.772.4751
E: samuel.kwon@leeko.com



변호사 박정민

T: 02.772.4916
E: jungmin.pak@leeko.com



외국변호사
Dmitry LETUNOV

T: 02.6386.6605
E: dmitry.letunov@leeko.com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의 최근 동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는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광범위합니다. 또한, 해당 제재 및 수출통제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관련된 국가들 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하여 새로운 행정명령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다수의 러시아 주요 기업을 SDN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새로운 행정명령은 Donetsk 공화국 및 Luhansk 공화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선언하였으며, 미국은 이와 별개로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다수의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은 2022년 2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65)입니다.¹⁾ 우선 해당 행정명령은 Donetsk 공화국 및 Luhansk 공화국에 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포괄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포괄적 금수조치가 위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관하여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제재에 준하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비-미국인)이 해당 지역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에 미국 달러 내지 금융기관이 관여된다면 미국인이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은, 각각 해당 행정명령 시점 또는 그 이후로, Donetsk 공화국 및 Luhansk 공화국에서 활동한 자, 그의 고위 지도자, 임직원, 그들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자 및 그들을 중대하게 조력, 후원하거나 금융, 재화, 용역을 그들에게 제공한 자의 자산을 동결(SDN)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onetsk 공화국 및 Luhansk 공화국에 관한 활동으로 SDN으로 지정되는 러시아 기업들에 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2021년 4월 15일자 행정명령 14024²⁾에 근거하여, OFAC은 2022년 2월 22일자로 Directive 1A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국채 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행정명령 14024에 근거하여 2022년 2월 24일자로 (1) 금융결제, 미국 결제계좌(correspondent account 또는 payable-through account)를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rective 2³⁾ 및 (2) 14일 이상의 신규채무 및 지분의 취득을 제한하는 Directive 3⁴⁾를 발표하고 각각 그에 따른 제재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Directive 2 및 Directive 3

에 따라 지정된 러시아 기업은 SDN에 준하는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들과의 거래는 제한된 범위에서 금지됩니다. Sberbank 및 그 자회사가 SDN이 아닌 Directive 20에 따른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일련의 금융기관 및 에너지 관련 기업(Credit Bank of Moscow, Gazprombank, Alfa-Bank, Russian Agricultural Bank, Sovcomflot, Russian Railways, Alrosa, Gazprom, Gazprom Neft, Rostelecom, Rushydro, Sberbank, Transneft)이 Directive 30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위에서 언급한 행정명령 14024, 벨라루스 관련 행정명령 14038,⁵⁾ 유럽에너지 관련 행정명령 14039⁶⁾에 근거하여 다수의 러시아기업을 SDN으로 지정해 왔으며,⁷⁾ 그 명단은 한동안 계속 업데이트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22년 2월 21일자 행정명령 14065에 따른 지정도 신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2년 2월 25일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국부펀드인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RDIF)에 대한 자산동결 제재도 고려 중이라고 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 27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역도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⁸⁾ 현재까지 신규로 지정된 주요 SDN은 금융기관인 Vnesheconombank(VEB), Promsvyazbank(PSB), VTB Bank(VTB), Bank Financial Corporation, Otkritie(Otkritie), Sovcombank(Sovcombank), Novikombank(Novikombank), 푸틴 대통령을 포함하여, 러시아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인 Sergei Lavrov, Sergei Shoigu 및 Valery Gerasimov, 에너지 관련 Nord Stream 2 AG와 그 CEO, 기타 자연인 및 선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KYC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지정은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러시아와의 사업에서 대부분 상정하였던 거래 상대방(특히 러시아 주요 은행 및 그 자회사)은, 제재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제약이 있으나) 넓은 범위의 경상, 무역, 수출거래가 가능한 SSI Entity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련하여 SDN 관련 위험이 광범위하게 인식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러시아 자연인, 기업들이 SDN으로 지정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기존에는 단지 SSI Entity에 불과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제재가 진행된 다른 국가에서 목격된 것처럼,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를 거래에 관여시켜 당사자 변경을 하거나, 지분구조에 변경을 가하여 제재대상자인지 여부를 실사,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SDN 또는 Non-SDN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과 기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절과 관련하여 General License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해당 General License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러시아 거래와 관련하여 - 현재 검토 중인지 기존에 이미 체결되어 유지되는 거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 거래상대방 및 최종사용자, 그리고 그 각 실질소유자에 대한 조사, 실사(기존 것의 업데이트 포함)가 중요할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가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에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재조항(Sanctions Clauses)을 편입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존에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거래를 살펴본 결과 신규로 지정된 제재대상자가 식별된 경우, (i) 기존 약정의 구속력 및 위반 가능성, (ii) 가용한 General License의 존재 여부 및 그 요건과 적용범위, (iii) 약정상 제재, 위법, 불가항력 조항, (iv) (약정과 별개로) 기타 불가항력, 위법 관련 법리의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스크리닝을 넘어, 기존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러시아 관련 거래 노출도에 따른 잠정적 위험을 분석하고, 우회거래를 식별, 차단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WIFT 배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EU의 관련 제재조치, SWIFT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 금융당국의 배제 명령 등 일련의 절차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미국은 수출통제를 통하여 러시아의 전략물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특히 기존에 러시아 수출시에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들의 다수가 새로이 통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존에도 러시아로의 통제품목 수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ommerce Country Chart⁹⁾ 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중국에 관한 제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미국 원산 일정한 통제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BIS로부터 수출/재수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넓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비-미국에 소재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원산 품목을 어떠한 재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미국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의 중점은 (i) 수출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 허가 요부 및/또는 (ii) 수입자 내지 최종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허가 요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근 발표인 2022년 2월 24일 Final Rule¹⁰⁾ 에 따르면, (1) 기존 러시아에 대하여는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러시아 통제 품목으로 편입하고, (2) 러시아 관련 수출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출면제/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3) 기존에는 일부 품목에 관하여만 러시아에 관한 군용사용 제한 적용이 있었으나, 향후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s Regulations: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군용사용 제한을 확대하고, (4) 기존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5) 수출이 제한되는 Entity List를 추가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한국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도전적인 사항은 FDPR의 확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에도 FDPR에 따라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외국생산품의 경우 미국 수출통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출대상국가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 FDPR(이른바 Core Rule이라고도 불립니다)의 적용 범위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 A. 미국 군수 또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미국산 기술에 따른 생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 해당 항목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통제목적이 NS(National Security)이고;
- 그에 따라 생산된 외국 품목이 ECCN에 NS 통제품목으로 등재될 수 있다면,

해당 외국 생산 품목은 재수출 허가 없이는 D:1, E:1, E:2 그룹의 국가로 수출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D:1 그룹의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 B. 미국 군수 또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미국산 기술에 따른 생산품인 경우에는:

- 해당 항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ECCN 600Series로 분류되어 있거나(군수), 9x515로 분류(인공위성)되어 있고,
- 그에 따라 생산된 외국 품목이 ECCN에 600Series(군수), 9x515(인공위성) 또는 0A919(군수)로 분류된다면,

해당 외국 생산 품목은 재수출 허가 없이는 D:1, D:3, D:4, D:5, E:1, E:2에 수출되거나 재수출될 수 없습니다.

위 A와 관련하여, 기존에, 미국산 NS 품목은 일반적으로 한국 전자제품 등 일반 품목을 생산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된 기술이 아니었으며, 'NS' 통제 품목이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더라도, 해당 제품 자체가 ECCN의 NS 통제 품목으로 등재되는 항목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NS 통제품목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4대 체제 가입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통제품목인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해당 생산된 제품이 NS 통제 품목에 해당하였다면 해당 제품은 한국 대외무역법에 따라서도 수출허가 대상품목이었을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별도의 컴플라이언스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 B는 군수 또는 인공위성과 관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이미 별도의 컴플라이언스가 수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 강화된 러시아 FDPR에서는 현존 일반 FDPR에 비하여 러시아로 수출되는 경우 통제되는 외국생산품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러시아 관련 FDPR의 개정은, 'Russia FDP Rule'을 신설하여,¹¹⁾ (1) EAR의 적용대상인 미국 원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ECCN 3, 4, 5, 6, 7, 8 또는 9의 카테고리를 갖고, 분류가 D 또는 E로 되어 있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직접 생산품이거나, (2) 위 (1)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생산품에 해당하는 (외국)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의 경우에는 FDPR(Core Rule)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비-미국 국가들의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에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 미국 원산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ECCN 3, 4, 5, 6, 7, 8 또는 9의 카테고리를 갖고, 분류가 D 또는 E로 되어 있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FDPR상 'NS' tag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보다 더 경미한 사유로 분류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FDPR의 범위가 절대적으로 현저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4대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통제되는 'NS' tag가 있는 ECCN과 달리, 다른 tag는 미국 자체적인 안보이익을 위한 tag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는 미국에서는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기술이지만, 다른 외국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기술인 경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만약 가정적으로 어떠한 소프트웨어/기술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 수출자가 BIS에서 수출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Red Flag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진술(End-User Certificate/Statement)의 작성을 요구받은 해당 국가 기업은 적어도 해당 소프트웨어/기술이 미국의 통제품목이라는 점 자체는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해당 국가로의 소프트웨어/기술 수출은 수출허가 대상이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해당 소프트웨어/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러시아로 수출은 미국의 재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기술의 도입 과정에서도 Screening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러시아 FDPR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기존 FDPR(물론 이에 추가하여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러시아 수출통제 절차)만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확장된 러시아 FDPR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초 발표 기준으로는 해당 면제 국가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¹²⁾ 3월 4일 현재 한국도 해당 면제 국가의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국가로 확정된다면 러시아 FDPR로 인하여 확장된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통제 관련 준수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일반적 FDPR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수출대상품목의 생산에 미국 원산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이 투입된 경우에는 해당 미국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ECCN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의 측면에서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가 도입하는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ECCN 분류 및 회사가 판매하는 품목의 ECCN 분류를 확인(특히 수출품일 경우 한국 ECCN에 없더라도 미국 ECCN으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고 이를 유지, 업데이트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 2월 28일 러시아 SWIFT 배제에 동참하고, 미국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에 관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러시아 FDPR의 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인 독자 수출통제의 시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 러시아 금융제재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1일자로, 주요 러시아 은행(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 및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금융기관에게 노출될 제재 위험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자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을 발족하였습니다.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경험이 풍부한 경제제재팀, 러시아 관련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CIS팀, 국제분쟁에 심도있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분쟁 해결팀의 각 소속 변호사들 중 최상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선별하여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관련 분쟁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은 워싱턴 소재 제재 전문 로펌과의 공조를 통하여 미국 및 EU의 제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유일한 대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 내 러시아 변호사를 통하여 러시아 현지의 법적/제도적 대응체계 등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최근 도입된 서방세계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조치)도 선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14065.pdf>
- 2)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4-19/pdf/2021-08098.pdf>
- 3)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correspondent_accounts_directive_2.pdf
- 4)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new_debt_and_equity_directive_3.pdf
- 5)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14038.pdf>
- 6)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14039.pdf>
- 7)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602>;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20220224>
- 8)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s-nato-condemn-putin-nuclear-alert-order-2022-02-27/>
- 9)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83-supplement-no-1-to-part-738/file>
- 10)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2-04300.pdf>
- 11)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82-part-734-scope-of-the-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1/file>
- 12)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docs/420-part-746-embargoes-and-other-special-controls/file>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